의안번호	2219873
의 뢰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계번호	26D345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7억 6,600만원 등 3년간 총 145억 3,900만원(연평균 48억 4,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2,189	3,008	172	5,369	1,790
	운영비	3,792	2,189	104	6,086	2,029
	시설비	514	165	-	678	226
	사무실 임차료	1,270	1,080	56	2,406	802
	합계	7,766	6,442	332	14,539	4,846

주 1.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170일, 12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4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함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 중 5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함(제1항·제2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제7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수사기간 등)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제1항(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제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3조(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O	-
2	안 제6조제5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O	-
3	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O	-
4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O	-
5	안 제11조제1항(재판기간 등)	O	-
6	안 제14조(보수 등)	O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함) 임명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사무실 임차료로 구분하고, 수사기간과 기소 후 공소유지기간 간 인력규모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을 구분하여 추계

❑ 특별검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건희 특검법」이라 함)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

○ 특별검사등의 처우 및 활동기간 등을 「김건희 특검법」(개정 기준)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 제정안과 「김건희 특검법」 비교

구 분	제정안	「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등의 대우 및 보수 수준	특별검사: 고등검사장 수준 특별검사보: 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 3급~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수준	좌동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인원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최대 50명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최대 80명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공무원: 최대 70명	파견검사: 최대 70명 파견공무원: 최대 140명
수사기간	170일 이내(준비기간 포함)	200일 이내(준비기간 포함)
공소유지기간	12개월 이내	좌동

❑ 수사기간에 특별검사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 50명이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소유지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직급 구성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사례를 참고

○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별수사관을 정원의 일부만 임명하고, 기타직을 수사 인력 보조 등을 위하여 추가 채용하여 운용[1]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임명될 특별수사관의 직급과 기타직 수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수사기간에 기타직 없이 모두 특별수사관(3급)을 정원에 따른 최대인원(50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

○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은 전원 신규임용되는 것으로 가정

○ 공소유지기간의 인력 규모는 김건희 특검의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를 참고하여, 수사 인력의 2분의 1 수준(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22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

❑ 파견인원은 최대인원인 100명으로 가정

○ 제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는 30명 이내, 공무원은 7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간에 최대인원인 검사 30명, 공무원 70명을 파견한다고 가정. 다만, 공소유지기간 파견인력은 21명으로 가정

○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2]

1)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80명이나, 실제 수사기간에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최대 46명이고, 기타직은 최대 23명을 채용하였음(자료: 법무부)

2)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경비 등에 대한 단가는 김건희 특검의 집행 내역[3]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4] 및 소비자물가상승률[5]을 각각 반영하여 산정

○ 특별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200일(2025.6.12.~ 2025.12.28.)이고, 운영비와 시설비 모두 이 기간에 지출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하되, 공소유지기간 중의 운영비는 수사기간 운영비의 60% 수준으로 가정

○ 시설비 단가는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 동일하다고 보고,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의 초기인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수사기간 종료 후 인원 축소 등의 사유로 업무공간을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소유지기간의 시설비 소요를 추계

❑ 수사기간은 170일, 공소유지기간은 12개월로 가정

○ 현 시점에서 실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은 각각 최장 기간(170일, 12개월)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3) 김건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 2025년

(단위: 백만원)

	수사기간(준비기간 포함 200일) (2025.6.12.~ 2025.12.28.)	공소유지기간 (2025.12.29. ~)
직무활동 운영비[1]	5,891	–[3]
시설비[2]	595	–[3]

1)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경비를 합산하여 산출
2) 시설비는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네트워크 공사, CCTV 설치공사 등
3) 김건희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기간으로 운영비·시설비 총 소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유지기간의 운영비 단가는 수사기간 운영비 단가의 60%, 시설비 단가는 수사기간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

주: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평균 185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39명, 기타직 21명, 파견인력 119명)이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6.3.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 부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함

○ 제정안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수사준비를 시작하여 2027년 1월까지 총 170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2027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1년은 공소유지기간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는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의 기준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표 3] 3대 특검 직급별 기준 보수액(2025년 기준)

직급	월 평균 보수(원)
특별검사	12,122,000
특별검사보	10,925,000
특별수사관(3급)	7,126,000

주: 월 평균 보수액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기관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5년 기준 보수액에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을 다음의 표와 같이 추계

[표 4] 수사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월 보수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월 보수액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특별검사	12.5	1	5	63	12.9	1	0.7	9	72
특별검사보	11.3	5	5	283	11.6	5	0.7	41	323
특별수사관(3급)	7.4	50	5	1,844	7.6	50	0.7	266	2,110
합계	–	56	–	2,189	–	56	–	316	2,50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5] 공소유지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 2027~2028년

구분	2027				2028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월 보수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월 보수액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특별검사	12.9	1	11.3	146	13.3	1	0.7	9	155
특별검사보	11.6	5	11.3	658	12.0	5	0.7	42	700
특별수사관(3급)	7.6	22	11.3	1,889	7.8	22	0.7	120	2,009
합계	-	28	-	2,693	-	28	-	172	2,86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 53억 6,900만원으로 추계

[표 6] 제정안에 따른 인건비 추정: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수사기간	수사기간	공소유지기간	공소유지기간	
인건비	2,189	316	2,693	172	5,369

주: 위 인건비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전원을 신규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운영비

❑ 특별검사의 운영비는 수사기간의 경우 김건희 특검의 운영비 단가를 적용하고, 공소유지기간의 경우 수사기간 운영비 단가의 60%를 적용하여 추계

❑ 수사기간 운영비는 총 43억 3,4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6.7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인당 단가(4.8백만원)[6]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7]를 적용

6) 수사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58억 9,100만원)를 개월 수(6.7개월)와 활동인원(평균 185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7) 총 156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인력 100명)

[표 7] 수사기간 운영비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소요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소요액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수사기간	4.9	156	5	3,792	5.0	156	0.7	542	4,33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소유지기간 운영비는 총 17억 5,2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운영비 1인당 단가의 60%를 적용한 단가(2025년 2.9백만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8]를 적용

[표 8] 공소유지기간 운영비 추정: 2027~2028년

구분	2027				2028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소요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소요액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공소유지기간	3.0	49	11.3	1,648	3.0	49	0.7	104	1,752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 60억 8,600만원으로 추계

[표 9] 제정안에 따른 운영비 추정: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수사기간	수사기간	공소유지기간	공소유지기간	
운영비	3,792	542	1,648	104	6,08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시설비

❑ 시설비는 김건희 특검의 시설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시설비는 수사기간의 경우 2026년에, 공소유지기간의 경우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8) 총 49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22명, 파견인력 21명)

❑ 수사기간 시설비는 총 5억 1,4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3.2백만원)[9]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

❑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총 1억 6,5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단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

❑ 시설비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6억 7,800만원으로 추계

[표 10]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 2026~2027년

백만원)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C+F,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재정소요 (C=A×B,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D, 백만원)	인원 (E, 명)	재정소요 (F=D×E, 백만원)	
시설비	수사기간	3.3	156	514	-	-	-	514
	공소유지기간	-	-	-	3.4	49	165	165
합계		-	-	514	-	-	165	67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사무실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는 수사기간의 경우 김건희 특검의 1인당 면적에 활동인원 수와 서울 도심지역 임대료 단가(2025년 3분기 월 31,000원/㎡)[10]를 각각 반영하여 추계. 관리비는 임대료의 50%(2025년 3분기 월 15,500원/㎡)로 가정함

❑ 수사기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총 14억 4,8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35㎡)[11]에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156명)를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5,464㎡)을 산출한 후,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

9) 수사기간의 시설비(5억 9,528만원)를 활동인원(평균 185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10)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25.10.30. 등록)
11) 수사기간의 사무실 임대면적(6,480㎡)를 활동인원(평균 185명)으로 나누어 산출함

[표 11] 수사기간 임차료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임차면적 (A, ㎡)	단가 (B, 천원)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임차면적 (E, ㎡)	단가 (F, 천원)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수사기간	5,464	46.5	5	1,270	5,464	46.5	0.7	178	1,44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소유지기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총 9억 5,8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35㎡)에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49명)를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1,716㎡)을 산출한 후,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

[표 12] 공소유지기간 임차료 추정: 2027~2028년

구분	2027				2028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임차면적 (A, ㎡)	단가 (B, 천원)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임차면적 (E, ㎡)	단가 (F, 천원)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수사기간	1,716	46.5	11.3	902	1,716	46.5	0.7	56	95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사무실 임차료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24억 600만원으로 추계

[표 13] 제정안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 추정: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수사기간	수사기간	공소유지기간	공소유지기간	
운영비	1,270	178	902	56	2,40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45억 3,900만원으로 추계

[표 1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2,189	3,008	172	5,369
	운영비	3,792	2,189	104	6,086
	시설비	514	165	-	678
	사무실 임차료	1,270	1,080	56	2,406
	합계	7,766	6,442	332	14,539

주 1.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170일, 12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170일, 12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